

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우회 회칙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 본 회는 “단국대학교 보건복지 대학원 원우회” (이하 “본회” 라 함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 회는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 이라 함)의 원우 상호 간의 이해와 유대강화 및 교류를 통하여 본 대학원의 올바른 방향성과 이념에 입각한 학문 활동 및 대학원과 원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위치) 본 회의 위치는 본 대학원 내에 둔다.

제 4조 (사업)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회원의 복지 증진 및 보건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활동
2. 보건복지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향상을 위한 활동
3.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
4. 회지발행 및 출판물 간행에 관한 사업
5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조 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

(단, 휴학과 미등록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)

제 6조 (권리)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활동에 관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
제 7조 (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회 활동에 적극참여할 의무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또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8조 (구성) 본 회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감사 1인
4. 그 밖에 회장이 필요에 따라 별도의 운영부서나 위원회를 설치, 구성하되 임원회의를 통해 운영 의견을 수렴한다.

제 9조 (선출)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회 회장은 직접선거 방식으로 회원들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.
(단,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)
2. 부회장,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.
(단, 초기임원 구성 시 총회의 동의 없이 공개모집 또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)
3. 본 회 회장의 선출은 임기만료의 2개월 전에 한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만료 1개월 전에는 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임기)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 11조 (직무)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직을 승계한다.
3. 감사는 재정회계 및 운영사항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.

제 4장 회 의

제 12조 (회의)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로 구성한다.

제 13조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한다.

제 14조 (회의의 공고) 본 회의의 정기총회는 개최 7일전 공고하며, 회장이 임원들에게 소집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.

제 15조 (개회 및 의결방법)

1. 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2. 임원이 임원회의에 부득이 불참을 할 경우 다른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그 경우 회장에게 사전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6조 (총회의 기능)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승인 및 본 회 활동에 필요한 회비 결정
4. 기타 원우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

제 5장 재 정

제 17조 (재원) 본 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총학생회비

제 18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
제 19조 (납부) 본 회의 원우회비(총학생회비)는 매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.

제 20조 (예산의 편성 및 집행) 회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.

제 21조 (용도) 본 회의 회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써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 및 학술 연구 활동 등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제 22조 (관리) 재정은 본 회의가 자치적으로 집행하되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장 부 칙

제 1조 (관례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 2조 (시행) 본 회칙은 2022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